

● 제32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672)

2024 . 4 . 25 .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의안번호 1672

I. 조례안 개요

1. 회부경위

- 가. 발의번호 : 제1672호
나.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다. 발의일자 : 2024.3.25.
라. 회부일자 : 2024.3.29.

II.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4.03.21.)한 주민조례청구(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기타(입법예고)

- 기 간: 2024. 4. 3.(수)~2024. 4. 7.(일)
- 제출의견: 총 5,766(의견제출 : 5,618건 /기타 148건)※중복포함.
(찬성: 4,069건 , 반대: 1,697건)
- 기 타: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접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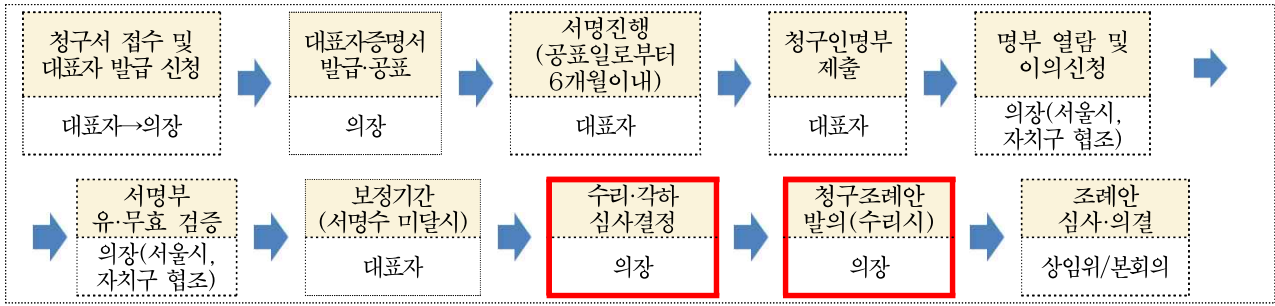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폐지조례안의 제안배경

- 동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024년 3월 21일 청구 수리를 완료한 주민조례청구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단체의 재의 요구 등 제정 당시부터 끊임없는 찬반 논란이 있었음.
- 이러한 이견 속에서 2023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 접수됨.
 - 총 33,908명의 서명부 중 2만 7천435명의 유효서명¹⁾이 검증 완료되어 2024년 3월 21일 청구 수리가 완료되었고, 2024년 3월 25일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 의해 의안번호 제1672호로 발의되어 2024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만 5,000명 이상임(조례 제3조제1항)

[표1] 주민 조례 청구 처리 절차



○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임.

2 세부 검토

가. 기존 탈시설화 추진 경과

① 국제사회 및 정부

○ 그간 국제사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탈시설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탈시설화의 개념 >

- 탈시설화 영어 표기는 ‘Deinstitutionalization’로, 탈(de)과 ‘시설화’ (Institutionalization)가 결합된 단어로 어원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설화’ (Institutionalization)의 상태에서부터 ‘탈’ (de)- 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²⁾.
- ‘탈시설화’ 라는 용어는 초창기에 ‘시설 폐쇄’ (closure of institution)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방지하고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이전시켜 통합된 환경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전체의 총체적인 노력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함.
- 특히 ‘탈시설’, ‘탈시설화’ 용어에 혼선이 있어 중립적인 용어로 재정립하여 공용어로 바르게 사용하도록 국가관련 위원회의 정정요구가 있었음.
- 국내에서 중앙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3년부터 공식용어로 ‘자립지원’을 사용하고 있음

출처 : 서울복지재단(서울복지재단 2022-43),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연구」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19조(자립적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및 「일반논평 제5호」를 통해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2) 박숙경.(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³⁾(2018)

- 인권위는 장애인 탈시설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탈시설 개념과 범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과 정책 혼동,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 탈시설 지원정책 격차로 인한 탈시설 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이 국가 차원의 구체적 계획과 정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함.
- 이에 2019년 8월 22일 정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시설 운영자, 정책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해 탈시설에 대한 논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계획이 담긴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3) 국가인권위원회 [2022.11]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과제 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8663&boardNo=7608669>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에서의 장애인 탈시설의 정의 〉

1.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란?

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나.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Release), 거주자의 지역사회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화시키는(Reform) 일련의 지원정책

2. 추진 원칙

(지원대상) 당사자의 주거결정권 +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탈시설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 가능한 주거+복지 서비스 결합

(시설변환) 신규설치 금지·거주제한 + 과도기 거주시설 운영기준 개선

(추진방식) 시범사업→ 제도·인프라 정비→ 본격시행 : 단계적 추진

② 국회입법 동향

〈 국회 입법 동향 〉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안)” (‘20.12.10 ~ 24.5.30.)
 - 최혜영 등 68인 발의(더불어민주당)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2.11.1 ~24.5.30)
 - 이종성 등 12인 발의(국민의힘)
-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23.9.6 ~ 24.5.30.)
 - 정혜영 등 10인 발의(정의당 등)

〈표 2〉 관련 법령 및 계류의안

구 분	주 요 내 용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 장애인의 정의 등 • 장애인의 권리 • 자립생활의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와 장애인 •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의 권리 • 자기결정권의 보장 •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주거약자법)	•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활동지원인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21대 계류 의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탈시설 요구는 법안 발의로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탈시설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음.
 - 최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탈시설지원법안은 법안 이름에 ‘탈시설’이 있으며, 법안의 목표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인권침해시설을 제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축소·폐쇄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23년 11월에 상정된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현재 중증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설의 운영 필요성이 있으나, 탈시설 용어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제외된 수정 의견을 제시함.
- 요컨대, 국회와 정부는 ‘탈시설’이란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해 ‘탈시설’이라는 개념을 제외하거나 실질적인 탈시설지원정책을 다른 자립지원 관련 법률에 포함시키는 대안을 모색 중인 상황임.

③ 서울시의 탈시설화 추진 현황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탈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음. 특히 서울시는 2021년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제정 등을 미리 준비하여, 2022년 7월 시의회 발의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됨.

〈 조례제정 및 경위 및 개요 〉

- 서울시, 탈시설 조례제정 계획 보도자료 배포 : ‘21.3월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에서 조례안 도출 : ‘21.6월 ~ ‘22.1월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탈시설 조례’ 발의 : ‘22.5.25.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발의 및 본회의 안건 의결 : ‘22.6.13.~ 6.21.
- 조례 시행 : ‘22.7.11.
- 조례 개요
 - 발 의 자 : 서윤기 前 의원 (제10대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주요 내용
 - (목 적) 장애인거주시설에 나온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대 상 자)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장애인
 - (기본원칙)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탈시설 여부 결정
 - (사업범위)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 주택 운영, 거주시설 변환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탈시설 관련 조사·연구·교육 등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탈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의되었음.

〈표3〉 서울시 탈시설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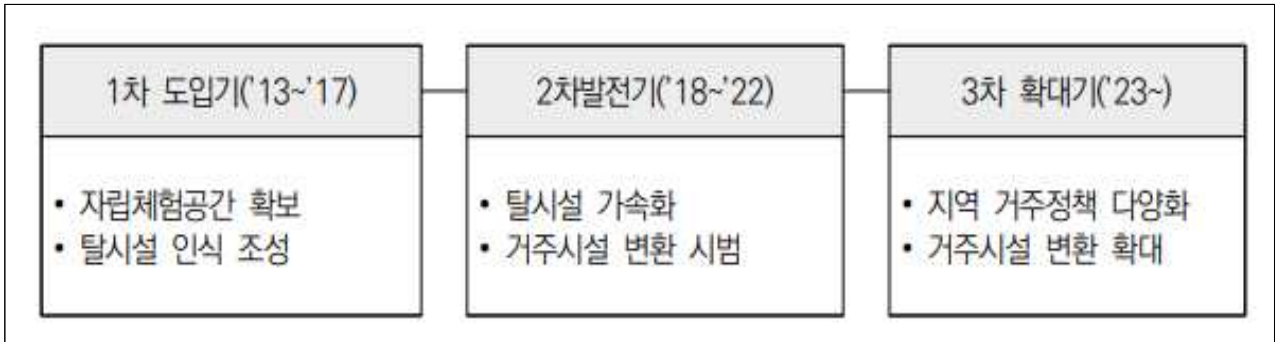
구 분	지원사업명	지원내역	비 고
주거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누적)	(’21년) 63호, 111명, 3,793백만원 (’22년) 64호, 98명, 3,904백만원 (’23년) 64호, 79명, 4,116백만원	※퇴소자
	장애인 지원주택 지원 (누적)	(’21년) 158호, 147명, 3,920백만원 (’22년) 202호, 199명, 5,502백만원 (’23년) 253호, 246명, 7,508백만원	※ 퇴소자 재 가 장애인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우선 알선	(’21년) 8명, 1,238백만원 (’22년) 5명, 869백만원 (’23년) 5명, 875백만원	※퇴소자 우선
자립지원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21년) 96명, 1,248백만원 (’22년) 78명, 1,170백만원 (’23년) 55명, 825백만원	※퇴소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	(’21년) 196명, 1,979백만원 (’22년) 228명, 3,401백만원 (’23년) 266명, 4,175백만원	※퇴소자 (3년간 지원)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1년) 99명, 919백만원 (’22년) 119명, 1,549백만원 (’23년) 153명, 2,220백만원	※퇴소자 우선

○ (탈시설화 기본계획)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을 살펴보면, 전국 최초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2009년⁴⁾부터 ‘자립생활체험 홈’ 제도를 시행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제1차(2013년~2017년), 제2차(2018년~2022년) 탈시설화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음.

4)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역사, 현황, 과제」, 국회미래연구원, 기획연구보고서 22-05호

2009년 석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베데스다요양원’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동승동 마로니에 공원에 나와 탈시설을 주장한 ‘마로니에 투쟁’이 있었고 이 당시 장애인 운동계가 서울시에 탈시설 5개년 계획수립, 중증장애인에게 자립 주택 제공, 활동 보조 시간 보장, 활동 보조 지원 대상 제한폐지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는 2009년에 서울복지재단 산하에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고 2011.1.14.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표4〉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방향



서울복지재단(서울복지재단 2022-43),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연구」

- (추진근거) 탈시설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조례」를 2022년 7월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는 장애인이 특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탈시설 대상시설) 본 조례의 탈시설 대상은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장애인으로서 이때의 ‘거주시설’이란⁵⁾ 장애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지체:2개소,시각:3개소,청각·언어:1개소,지적:11개소)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22개소)을 의미하며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탈시설 대상시설을 포함한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표 5〉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24.5.31. 기준, 단위: 개소/명)

구 분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거주시설	영·유아 거주시설	
	정원	현원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총 시설수	45개소		2	3	1	14	23	2	
이용자	2,481	2,000	71	103	22	566	1,172	66	
종사자	1,919	1,743	72	91	26	458	1,024	72	
지원 시설	시설 수	41개소	2	3	1	11	22	2	
	이용자	2,314	1,931	71	103	22	520	1,149	66
	종사자	1,851	1,713	72	91	26	439	1,013	72
미지원 시설	시설 수	4개소	-	-	-	3	1	-	
	이용자	103	69	-	-	-	46	23	-
	종사자	39	30	-	-	-	19	11	-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장애인거주시설중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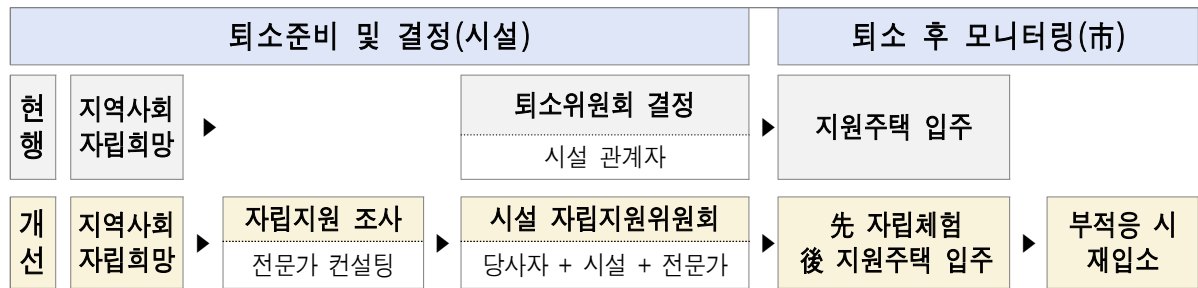
-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2020)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지원시설 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43개소에서 2023년 41개소로 2개소가 감소하였으며 입소자도 2013년 3,147명에서 2023년 1,939명으로 1,208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6〉 연도별 지원시설수 및 이용인 현황(개인운영 시설 제외)

(단위 : 개소, 명)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시설수	43	43	44	44	44	45	45	44	41	41	41
이용인	3,147	3,088	2,992	2,845	2,743	2,638	2,524	2,399	2,117	2,007	1,939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탈시설 사업내용) 조례상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6. 탈시설 관련 조사·연구·교육, 7. 그 밖에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 (탈시설화 지원계획) 서울시는 조례 제정이후 탈시설에 대한 현장의 견을 수렴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를 개선할 계획임. 또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현재 운영지원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을 2028년까지 거실과 방·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 환경’으로 전면 개편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시설관계자와 전문가가 자립지원 컨설팅을 거쳐 자립지원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자립지원 필요도를 면밀히 상담하고, 지원주택에 들어갈 때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자립체험 기간’을 통해 적응 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의 ‘장애인 자립지원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 예정임.
 - 이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지원 필요도 및 자립의사 등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을 신설·보완한 것임.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나. 폐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위에서 언급한 당초 조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아직 제도적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설퇴소는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안이 발의됨.

다. 집행부서 및 단체 의견

- 집행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의견 : 원안가결
 - 서울시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는 입장과 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균형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 서울시는 시의회의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된 뜻을 존중할 예

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안락한 시설환경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관련단체 의견

-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폐지조례안 찬성.
장애인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돌봄이 최우선인 중증장애인에게 탈시설 가속화와 시설폐지를 유도하여 주거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탈시설에 대한 반대입장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 폐지조례안 반대.
조례 폐지(안)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로 조례 폐지는 탈시설화와 관련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임.

3 검토의견

- 시설거주 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립을 원치 않거나,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현실 및 탈시설 자립 지원이 충분치 못한 현실을 감안해 볼때 폐지조례안 발의 취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 통합되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탈시설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경향이며, 또한 탈시설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담고있던 탈시설화를 위한 주거·돌봄 등 자립지원 근거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조례 폐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탈시설 조례폐지와 동시에 탈시설 자립지원관련 사항을 관련조례인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즉, 탈시설 조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측 모두의 우려를 해소하고, 탈시설화 정책의 기본취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스스로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편, 그 지원이 충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참고 1

탈시설 지원정책 관련 조례 주요내역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목 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u> 이 독립된 주체로서 <u>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u>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u> 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 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탈시설"(이하 '탈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지원주택"(이하 '지원주택'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하 '자립생활주택'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6. "거주시설 변환"이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9.5.16>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외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삭제 <2018.1.4> 7.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8.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 상 및 기본 원칙	<p>제3조(대상자)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적용한다.</p> <p>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p>	<p>제14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p> <p>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시설외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p>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p> <p>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p> <p>제6장 주거지원</p> <p>제17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주택 공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⑤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사업 및 지원 범위</p>	<p>제8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6. 탈시설 관련 조사·연구·교육 7. 그 밖에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 옹호 사업 4.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5.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6.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